

의안
번호

434

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3. 19.

전문위원 강 영 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이인순 의원 외 12명

나. 의안번호 : 제434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02. 28.

라. 회부일자 : 2025. 03. 13.

2. 제안이유

-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며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다.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적용범위 (안 제4조)
- 라.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(안 제5조)
- 마.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
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5. 03. 06. ~ 2025. 03. 12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사회복지시설급식법”으로 한다)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
- 동법 제5조¹⁾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**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**를 설치·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고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성북구에서는 2011년부터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어린이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어, “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”를 “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”로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하고자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

1)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.

<2021. 7. 27제정, 2022. 7.28시행>

<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>

(2025. 1. 1. 현재)

수탁기관	센터위치	직원현황	업무내용	대상시설
동덕여자 대학교 산학협력단	성북구 장월로 1마길 56 (상월곡동)	총 15명 (센터장 1, 팀장 3, 팀원 11)	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·영양 관리 및 교육지원 업무	총 231개소 7,368명 · 어린이집 174개소 5,391명 · 유치원 13개소 745명 · 아동복지시설 44개소 1,232명

※ 어린이급식소 사업대상은 100인미만 영양사 미고용시설로

2022년 258개소, 2023년 243개소, 2024년 231개소로 매년 사업대상이 감소 추세임.

□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함.

○ 안 제1조(목적) 정비

근거법령에 「사회복지시설급식법」 제5조2)를 추가하였고 대상을 성북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으로, 센터명을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정비함.

<신 · 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	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

- 2)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.

리 특별법」 제21조에 따라 성북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리 특별법」 제21조 및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와 취약계층-----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-----.

○ 안 제2조(정의) 정비

제2호에 “취약계층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, 제3호에 현행 어린이급식소를 급식소로 변경하여 「어린이식생활법」 및 「사회복지시설급식법」에 따른 급식소임을 명확히 하였고 그 외 제4호 위생관리, 제5호 영양관리에 대한 정의를 간결하게 정비함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어린이”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.	1. ----- --이하 “어린이식생활법”----- -----.
2. “어린이 급식소”란 (이하 “급식소”라 한다)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.	2. “취약계층”이란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사회복지시설급식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따른 노인·장애인 등을 말한다.
3. “위생관리”란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 또는 용기·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,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,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.	3. “급식소”란 「어린이식생활법」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「사회복지시설급식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성북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

4. “영양관리”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,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. <신 설>	4. “위생관리”란 식재료의 검수·보관·조리, 배식 및 시설·환경관리 등 급식 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. 5. “영양관리”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,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.
---	---

○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신설

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함.

○ 안 제4조(적용범위) 정비

적용범위를 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”에서 “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”로 정비함.

○ 안 제5조(설치 및 운영 등) 정비

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른 센터를 설치·운영함을 명시하였고,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어린이급식소 관련 사업과 사회복지급식소 사업 내용을 신설하는 등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함.

<신 · 구조문대비표>

현	행	개	정	안
제4조(설치 및 운영 등) ①	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	제5조(설치 및 운영 등) ①	구청장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「어린이식생활법」 제21조 및 「사회복지시설급식법」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	

<u>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<u>어린이 급식소 위생·안전·영양관리</u> 실태조사,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. <u>위생·안전·영양관리</u> 교육자료, 프로그램 개발 및 <u>보급·운영</u> <신 설> 3. <u>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, 영양·식사지도</u> 4. <u>어린이 급식소 위생·안전·영양관리</u>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·컨설팅 5. <u>우수 농·축·수산물 등 식재료</u>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<u>위생적 관리</u> <신 설> <신 설> 6. 그 밖에 <u>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	② -----. 1. <u>급식소 위생·영양관리 관련</u> ----- 3. <u>위생·영양관리</u> ----- <u>보급</u> 4. <u>시설유형·대상자별 식단 개발·보급 및 영양·식사지도</u> <삭 제> 2. <u>급식소 위생·영양관리</u> ----- 5. <u>식재료</u> ----- <u>위생관리 지도점검</u> 6. <u>어린이급식소의 경우 어린이, 조리원, 원장·교사,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, 정보 제공, 홍보 등</u> 7. <u>사회복지급식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</u> 가. <u>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, 교육, 상담 및 정보 제공</u> 나. <u>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, 영양관리카드 작성·관리, 영양상담</u> 8. ----- <u>구청장이 급식소의</u> ---
--	---

○ 안 제6조(지원대상 등) 정비

센터의 지원대상을 「어린이식생활법」에 따른 급식소 및 「사회복지시설급식법」에 따른 급식소를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함.

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성북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였던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2021. 7.27 제정하여 시행중인 「사회복지시설급식법」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인 노인·장애인을 포함하여 단체급식 관리를 지원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
- “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”에서 어린이 급식업무와 사회복지 급식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센터의 노하우와 전문인력 활용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 성북구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대상 기관 현황 >

(2025. 1. 1.현재/ 단위:개소)

합계	기존 (어린이)				확대 (사회복지)						
	소계	어린이집	유치원	아동복지시설	소계	노인의료복지시설		재가노인복지시설		장애인거주시설	피해장애인쉼터
						노인요양시설	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	주야간보호서비스	재가노인지원서비스	장애인공동생활가정	성북피해장애인쉼터
265	231	174	13	44	34	9	3	18	1	2	1

※ 어린이급식소(상시 급식 제공) : 100명 미만 영양사 미고용 시설

※ 사회복지 시설(상시 급식 제공) : 50명 미만 영양사 미고용 시설